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학생이 교내에서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

■ 조정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777호)

2024. 9.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강대훈

목 차

Ι.	제안경위		1
П.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Ш.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조정훈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2024. 8. 13.

다. 회 부 일: 2024. 8. 14.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미국, 프랑스 등 세계 각국에서 청소년의 SNS 중독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아동·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거나 교내 스마트 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음. 한국 역시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만 3~9세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25%이며 만 10~19세는 40.1%나 되었음. 특히, 청소년(36.7%)이 온라인 숏폼 동영상 이용시간조절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나타났음.

이에 학생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 목적의 사용이나 긴급 한 상황 대응 등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교내에서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신설 등).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학교의 장과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학생이 교내에서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신설).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20조의3(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지도)
	학생은 교내에서 스마트기기(휴대전
	화, 태블릿PC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정보통신기기를 말한다)를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 목
	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
	는 경우에는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u>수 있다.</u>
제20조의3(교원 개인정보의 보호) (생	<u>제20조의4</u> (교원 개인정보의 보호) (현
략)	행 제20조의3과 같음)

'스마트폰 과의존'은 과도한 스마트폰 이용으로 현저성이 증가하고, 이용 조절력이 감소하여 문제적 결과를 경험한 상태를 의미하며 ① 현저성, ② 조절 실패, ③ 문제적 결과1) 3요인으로 구성됨2).

¹⁾ ① '현저성'은 개인의 삶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생활패턴이 다른 형태보다 두드러지고 가장 중요한 활동이 되는 것이고, ② '조절 실패'는 이용자의 주관적 목표 대비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자율적 조절능력이 떨어지는 것이며, ③ '문제적 결과'는 스마트폰 이용으로 인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의미함.

²⁾ 출처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스마트쉼센터' 누리집

최근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심각하다고 지적되고 있는바, 2024년 기준 조사대상 124만 9,317명 중 과의존 위험군에속하는 청소년은 22만 1,02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

(단위 : 명)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과의존 위험군(A+B-C)	235,687	230,634	221,029
인터넷 과의존 위험군(A)	188,978	181,065	174,374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B)	134,832	131,560	127,845
중복위험군(C)*	88,123	81,991	81,190

* 중복위험군: 인터넷 과의존 위험군이면서 스마트폰도 과의존 위험군인 청소년 자료: 여성가족부, 2024년 청소년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

스마트폰 과의존을 겪는 청소년은 'VDT 증후군'3)과 같은 신체적인 이상을 겪는 것은 물론, 수면 부족으로 수업 시간에 졸거나 산만한 행동을 보이며, 스마트폰으로 소통하는 것을 더 편하다고 느끼면서 실제 세상과 격리되는 '디지털 격리 증후군' 등의 인지적 문제를 겪기도 함.

또한 학교 내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제지하는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 거나, 수업과 관련 없는 스마트폰 사용으로 교사의 수업을 방해하는 등 스마트기기 사용과 관련하여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학생이 교내에서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³⁾ VDT 증후군이란 Visual Display Terminal Syndrome의 약자로, 안구건조증, 거북목증후군, 목 디스크 등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등의 영상 기기를 장시간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건강상의 이상을 의미함

수업 등 교육 활동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학습권·교권 침해를 방지하면서 학생들이 수업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교사간 갈등 발생을 예방하며, 학생들의 학교 내 대면 사회적 상호작용을 더욱 증대시키려는 취지를 가진 것으로 보임.

참고로, 프랑스에서는 지난 2018년 모든 공립 및 사립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휴식 시간을 포함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동안 스마트폰 및 기타 인터넷 지원 기기를 소지는 할 수 있되 사용은 금지하는 법안 이 가결되었고,

2024년에는 200개 중학교에 대하여 등교할 때 사물함에 스마트폰을 보관했다가 하교할 때 돌려받는 '디지털 쉼표' 조치를 도입하였으며, 그 성과를 평가하여 2025년 1월부터 모든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할 예정임.

다만,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 및 통신의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등교 시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일과시간 동안 소지·사용을 금지하는 행위를 중단하며, 「학교생활지도규정」을 개정할 것을 여러 차례 권고하였다는 사실과4),

지난 2023년 9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면서

^{4) ※ (}인권위 결정문, '23.4.12.) 22진정0736700·0747600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에 관한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하여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 및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규정 개정 권고

학생이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5)한 것과 학교 내에서 SNS 어플리케이션 사용을 통제하는 방식 등 다른 방법으로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고려할 필요가 있음.

교육부는 최근 SNS가 학생들의 지능·인지·정신건강 발달에 악영향을 끼치고 학생들이 유해·불법 컨텐츠와 사이버 (성)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학생들이 교내에서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률로써 제한하려는 개정 취지에는 적극 동 감하나,

규정 내용과 제목의 일관성, 위임 사항을 고려하여 법안 문언을 수 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법안 내용상 학생의 교내 휴대전화 소지는 가능하지만 사용을 금지한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학교의 경우 오히려 더는 수거하지 못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고, 제재 조항이 없어 유명무실한 선언적 의미의 법이 될 수 있으며.

현행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학생이 휴대 전화를 수업 중에만 사용할 수 없으며 휴식 시간에는 사용이 가능하 므로, 휴식 시간에도 사용치 못하게 하는 입법화에는 찬반 논란이 예 상되는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함.

^{5)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4조(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u>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u> <u>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u>.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등에 따라 학생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바,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 하는 과잉금지 원칙을 근거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184